

질식재해 발생 사례

- 폐기물 운반선 탱크 청소작업 중 중독 -

우리 환경인들의 삶의 터전인 현장에는 많은 유해 위험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지나쳐버림으로써 돌아킬 수 없는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본지는 최근 발생된 환경오염관리 재해사례를 알려드림으로써 발생가능한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코자 합니다. [편집자 주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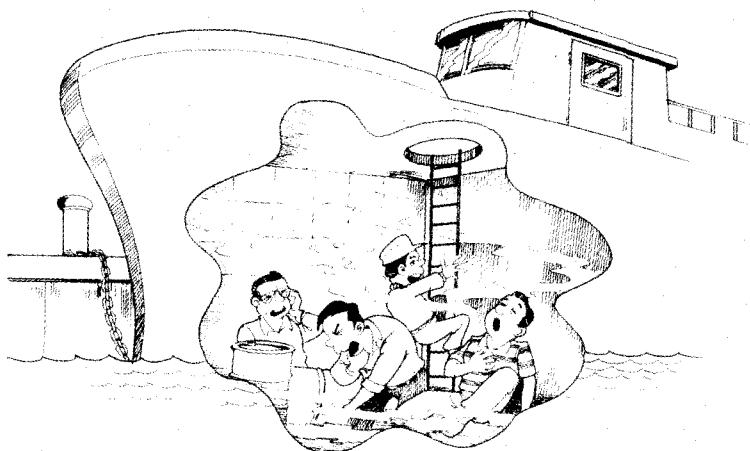
1. 재해개요

가. 발생일자 : 1999년 6월

나. 소재지 : 경북 포항시

다. 사업장 : ○○개발주

라. 피해자 : 사망2명, 부상2명



마. 사고유형 : 폐기물 탱크내부 청소 중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에 중독 사망, 구하려면 동료도 부상

바. 발생개요

- 1999년 6월 경북 포항시 부두에 정박 중이던 ○○개발㈜ 소속 폐기물 운반선에서 폐기물 탱크내부를 청소하던 피해자가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탱크 내부에서 쓰러지자 동료작업자 3명이 구조하기 위해 탱크 안으로 들어가다 쓰러져 2명은 사망, 2명은 부상한 재해임

2. 재해발생경위

- 사고선박 폐기물 저장탱크 내 저장되어 있는 폐기물을 옆에 정박된 타 선박으로 이송 및 폐기물 저장탱크를 청소하기 위하여 작업을 개시함
- 사고선박내 4번탱크 내부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10여분 후 2번 탱크 내부로 들어가서 해수공급호스로 청소작업을 하던 중 이상을 느껴 탱크밖으로 나오기 위하여 사다리를 타고 2칸정도 올라오던 중 탱크 내부로 실족함
-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다른 근로자 3명이 차례로 2번 탱크내에 들어가서 쓰러짐
- 기관장이 가스중독임을 인식하고 방독마스크 착용상태로 탱크내부로 들어가 1명은 로우프에 감아 위로 옮겨보내고 나머지 3명은 폐기물에 잠기지 않도록 탱크내 배관 위에 걸쳐두고 견디기 힘들어 나옴

- 다른 근로자가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서 나머지 3명을 구조하였으나 2명은 사망함

※ 사고발생 탱크

- ▶ 탱크크기 : W3.8m × L5.0m × H3.7m
- ▶ 탱크용적 : 70.3m³
- ▶ 맨홀크기 : W65mm × L870mm × H750mm

3. 재해발생원인

- 호흡용 보호구 지급수량 부족, 보호구 미착용

- 폐기물(각종 오니)에서 H₂S(황화수소), CO(일산화탄소), 가연성가스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저장 탱크내 청소작업과 구조작업을 함에도 송기 마스크 1개만 지급되었으며 재해자 4명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, 최종 구조작업자 1명만 송기마스크를 사용하여 재해발생 및 재해 확대의 원인이 됨

- 사고당시 저장탱크에는 61cm 깊이로 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어 폐기물 부패 시 생성되는 H₂S, CO, 가연성가스 등 각종 유해가스가 발생되고 있었으며, 특히 80mm 호스로 해수를 주입할 경우 폐기물에 용해되어 있던 유해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고농도의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나 중독에 의하여 쓰러지면서 폐기물에 얼굴 등이 잠겨 질식한 것으로 추정됨

- 사고발생 탱크 내 유해가스농도 측정결과

<다음페이지 표 참조>

* H₂S 측정가능 범위 : 0~150 ppm인 기기 사용

* H₂S는 노출기준 15ppm(STEL)의 매우 유해한 물질로 측정장비의 측정범위를 초과하여 정확한 농도는

구 분	높 이 (m)	H ₂ S (ppm)	CO (ppm)	가연성가스 (%)	산 소 (%)	비 고
안전상태 (해수주입전)	1	150 초과	12	2	20.7	폐기물 수위 : 61cm
	2	77.5	0	0	20.8	
	3	37.5	0	0	20.9	
해수주입시	1	150 초과	80	2	20.7	

알 수 없으나, 해수주입시 CO 농도가 12ppm에서 80 ppm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농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됨(700ppm 이상시 1~2회의 호흡만으로도 호흡이 마비됨)

○ 내부환기 미실시

H₂S(특정화학물질 제2류) 등이 발생되는 물질이 들어있던 탱크 등 설비의 내부에서 청소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전에 환기용 팬 등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환기하고, 특히 작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환기를 계속 실시하여야 하나 환기를 미실시함

○ 저장탱크 내부의 유해가스농도 측정 미실시

H₂S 등이 발생되는 물질이 들어있던 탱크 등 설비의 내부에서 청소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에 특정화학물질 등의 농도측정 등 건강상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나 미실시함

4. 동종재해예방대책

○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

특정화학물질이 발생되는 물질이 들어있는 탱크

등의 설비내부에서 청소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출입하는 근로자 전원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며 구조 시에도 반드시 착용 후 출입하여야 함

○ 작업시작 전 유해가스 농도 및 산소농도측정 실시

특정화학물질이 발생되는 물질이 들어있는 탱크 등의 설비내부에서 청소 등의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작업 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함. 특히 작업으로 인하여 유해가스 발생이 지속되거나 산소결핍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계속적인 측정을 실시하여야 함

○ 작업시작 전, 작업중 환기실시

유해가스가 체류하거나 발생되는 설비내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전, 작업중 환기설비에 의한 환기 실시

5. 유사재해사례

○ 캐미칼(B,T,X) 운반선 탱크청소중 중독

(1999년 7월 : 사망1명, 부상1명)